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보훈부에 보훈 관련 국제 교류·협력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과 보훈기금의 운용 및 보훈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을 각각 증원하고,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이천호국원에 유골·시신 또는 영현(英顯)의 안장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 및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국가보훈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. 31. ~ 2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331”을 “333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27”을 “329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314”를 “316”으로 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1,157”을 “1,159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157”을 “1,159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1,126”을 “1,128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2]

국가보훈부 공무원 정원표(제31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331</u>	<u>333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327</u>	<u>329</u>	+2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314</u>	<u>316</u>	+2
•	•	•	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3]

국가보훈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32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,157</u>	<u>1,159</u>	+2
일반직 계	<u>1,157</u>	<u>1,159</u>	+2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1,126</u>	<u>1,128</u>	+2
·	·	·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68